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88

발의연월일: 2025. 6. 10.

발 의 자 : 허 영·박지원·김병기

박 정・장철민・김영환

김태선 • 위성곤 • 전재수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으나 유신 독재 정권 시절인 1973년 10월 10일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현행법(당시 명칭은 「군법회의법」)에서도 해병대와 관련한 군사법제도 규정들이 삭제된 바 있음.

그런데 그 뒤 실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변변한 장비도 제때 조달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참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아 온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 엄연히 해병대를 지원하여 복무한 뒤 전역한 전역자들조차 육해공군 3군 체제라는 한계 때문에 병적에 해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등의 부당함을 겪어 왔던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해병대의 전력 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여러 조치의 일환으로,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의안번호 제10689호) 및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0687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069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0691호)의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를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로 조직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를 "해상 작전을 주임무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병대는 상륙 및 특수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 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8조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군참모총장"을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에 해병대사 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공군"을 "공군·해병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각군본부에"를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군"을 "육군·해군·공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군본부"를 "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본부"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병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해병대는 이 법에 따른 해병대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 ----<u>해군, 공군 및</u> 해병대(이하 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 "각군"이라 한다)로 조직한다. 에 해병대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생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현 행과 같음) 략) ②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 해상작전을 주임무로-----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 한 교육 · 훈련을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병대는 상륙 및 특수작전 <신 설> 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 한 교육 · 훈련을 한다.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 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 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지휘 · 감독한다.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1	육군에	육군참	·모총장,	해군
에	해군참」	모총장,	공군에	공군
참J	모총장을	둔다.		

- ② (생략)
-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 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 휘·감독한다.
-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합동참 모본부에 합동참모의장 외에 소속 군이 다른 <u>3명</u> 이내의 합 동참모차장과 필요한 참모 부 서를 둔다.
 - ② · ③ (생 략)
-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생략)
 - ②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 하며, 합동참모의장이 그 의장 이 된다. <u>다만, 해병대와 관련</u> 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병 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한다.
 - ③ · ④ (생 략) 제4장 육군·해군·공군

①
참모총장, 해병대에 해병대사령
<u>관</u>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2조(합동참모본부) ①
<u>4명</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합동참모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u><단서 삭제></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장 육군·해군·<u>공군·해병</u> <u>대</u>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각군본부에</u> 참모총장 외에	② <u>육군본부·해군본부·공군</u>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본부에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	
③ 각군 참모차장은 해당 군	③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을, 해병대부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보좌하며,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기원 해 6 년 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	<u> 본부</u>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군참	<삭 제>

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

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

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